SEOUL NATIONAL UNIVERSITY

교원 창업 가이드북

Faculty Startup Guidebook

2026년 개정판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CONTENTS

목차

01 **창업에 대한 개요** 3
기업가정신 · 대학의 시대적 변화와 기업가적 대학 · 교원 창업 · 창업승인 절차 ·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관

02 **교원 창업 절차** 7

03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 9
사전 검토 · 요건 및 신청서 제출 · 주식출연 · 이해상충 문제 확인 · 창업기업 변경, 창업 승인 취소 및 유예

04 **창업승인 신청서 작성** 17
신청서 작성 방법 · 교원 창업 심의 기준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20
직무발명 · 기술이전 ·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주요 사례

06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26
소개 · 투자/회수 프로세스

07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28
법인 설립 절차 · 사업자등록 및 기타 절차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 31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 · 벤처기업 확인 요건 · 벤처기업 확인 시 주요 혜택

09 **대학 창업공간 활용** 34
학내 공간 활용 방법 · 창업보육공간 현황

10 **교원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36
SNU BIG SCALE UP (창업지원단) · SNU IR CLUB (창업지원단) · 창업멘토링 (창업지원단) 등

별첨 **창업 지원 주요 사이트** 40
학내 · 학외

부록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서식** 43

CHAPTER

01

창업에 대한 개요

01 기업가정신

02 대학의 시대적 변화와 기업가적 대학

03 창업이란?

04 창업형태에 따른 분류

05 교원 창업

06 창업승인 절차

07 창업지원위원회

08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관

기업가정신

- 기업가정신은 다양한 학자들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보통 '새로운 도전과 혁신 활동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정의할 수 있음
  - 슘페터: 기업가정신을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의 재능 또는 역량으로 보고, 기업가를 낡은 것을 파괴하고 새로운 전통을 창조하는 혁신가, 즉 창조적 파괴자라고 정의
  - 피터 드러커: 기업가란 변화를 탐색하고 새로운 기회로 실천에 옮기는 사람이며 이를 기업가정신이라고 할 수 있음
  - 티몬스: 가치 있는 어떠한 것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행동으로, 현재 자원의 부족을 감수하며 새로운 기회를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열정과 헌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의지를 필요로 함
- 국가별 기업가정신 수준을 진단하는 '글로벌 기업가정신 모니터(GEM)'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상위권에 속하는 등 창업기업의 혁신·도전정신에 대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음

대학의 시대적 변화와 기업가적 대학

- 대학은 교육과 연구의 역할뿐만 아니라 연구결과물을 통한 창업지원이라는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음
- 기업가적 대학 패러다임의 등장은 산학협력 및 다학제·융복합 기초연구를 통한 기업으로의 원천기술 이전, 지역 및 국가경제 기여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음
- 대학은 혁신 기술과 인력의 보고로 창업생태계의 한 축이 될 수 있으며, 주요 선진국에서도 대학과 기업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구성원이 창업을 시도할 수 있는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음

※ 실리콘밸리(미국), 리서치트라이앵글파크(미국), 중관춘(중국), 실리콘 펜(영국), 시스타 사이언스파크(스웨덴) 등 창업·산학연 클러스터에서 대학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

창업이란?

- 영리를 목적으로 '중소기업'을 새롭게 설립하는 것으로, 창업의 형태에 따라 일반창업, 기술창업, 벤처창업이 있으며 대학 실험실 보유 기술의 창업(사업화)을 실험실창업으로 별도 구분

창업형태에 따른 분류

- 기술창업: 혁신기술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새로운 시장을 창조하여 제품이나 용역을 생산·판매하는 형태의 창업으로, 대학 기술창업은 대학의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창업이라 정의할 수 있음
  - 직무발명으로 인한 학교 보유 기술 활용 시 반드시 창업기업으로 기술이전이 필요

- 벤처창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벤처기업의 요건을 갖춘 기업
  - 창업 후 벤처투자유형, 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등 유형을 확인하여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SMES)을 통해 벤처기업 확인 신청
- 실험실창업: 정부·민간의 R&D 지원을 통해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연구성과와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창업
  - 산학협력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통해 실험실 기술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을 진행

※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기술창업가이드,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등

교원 창업

-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나 임원, 지분 참여 등으로 활동하는 것을 의미함
- 대학 및 대학 연계 지원 제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시장에서 성과를 거두는 교원 창업기업이 늘어나고 있음(IPO 달성, 연구성과물 기반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적인 Exit 사례 증가 등)
- 교원 창업기업은 누적 189개(대표이사 기준, 2022년 144개 → 2023년 159개 →2024년 177개 →2025년 189개)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교원 창업기업 누적 투자액 약 1.1조 원, 2024년 매출액 3,975억 원, IPO 15건 등 성과를 거두고 있음(2026. 2월 기준)
- 우리 대학은 창업심의 시 교원의 연구성과물(특허, 노하우 등 지식재산권) 활용 여부를 확인하며, 시장 영향력과 본교·국가사회 기여도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적극 지원 및 투자 대상기업으로 추천함
- 교원 창업을 진행하기 전 학교의 창업 사전 승인 절차를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해야 함

창업승인 절차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에 따라 창업 기업 설립 전에 창업지원위원회의 창업 승인을 받아야 함(사전 심의 원칙)

소속 대학(원)	창업지원단	창업심의위원회	창업지원위원회	창업지원단
창업승인 신청(공문)	접수	사전 검토	승인 심의 (발표 및 질의응답)	창업승인 통보

- 사전 검토: 창업지원단·산학협력단·서울대학교 기술지주와 신청 교원 간 컨설팅, 필요 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기술성·사업계획서 보완

-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 차수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고 재심의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 위원회는 연 6~8회 개최되며, 전기관 공문을 통하여 공지(공문명: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안내)
- 심의: 기술성, 타당성, 사업성 및 성장성, 기타 고려사항에 대한 심의 기준에 따라 '승인', '조건부승인', '불승인'으로 평가(04장 [2] 참조)
- 문의: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지원팀 (02-880-2226)

창업지원위원회

- 교원 창업 승인 및 대학 창업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심의 / 창업지원단장을 위원장으로 대학 내부·외부 위원으로 구성(규정 개정 시 위원 수 변동 가능)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관

- 창업지원 전담조직인 '창업지원단'이 대학본부 행정기구로 있으며,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관 협의체 총 14개 기관, 창업보육센터 총 8개소, 캠퍼스타운 총 5개소 등 다양한 학내 창업지원 유관기관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서울대학교 창업지원기관 협의체(위원장: 연구부총장): 창업지원단, 시흥캠퍼스본부, 경영대학 벤처경영기업가센터, 공과대학 서울공대혁신창업센터,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창업지원센터, 첨단융합학부, 치의학대학원 덴탈메디케어창업보육센터, 생명공학공동연구원,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학특화창업보육센터,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서울대학교 ANCHOR 사업단, 서울AI허브

CHAPTER

02

교원 창업 절차

순서	절차	담당	내용
1	창업승인 신청 및 접수	소속 대학(원) 경유 → 창업지원단	창업 승인 신청 공문(창업 신청 유형 ㉮·㉯·㉰ 반드시 기재, 다수 해당 시 전부 기재),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확약서 (원본도 소속 대학(원)에서 창업지원단(32-1동 2층)으로 제출) (04장 참조)
2	사전 검토	창업심의위원회 (창업지원단, 산학협력단, 기술지주)	이해상충 문제, 특허 및 기술이전, 사업성 등 사전 검토하여 별도 안내
3	승인 심의	창업지원위원회	유형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에 취임하는 경우) 해당 시 교원이 위원회 현장에서 직접 발표(5~10분) → 승인·조건부승인·불승인 통보 유형 ㉯·㉰ 해당 시,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발표 요청할 수 있음
4	학내 공간 임대 (해당 시)	소속 대학(원)·연구시설	교수 연구실 등 학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창업 승인 후 공간 임대차 계약 체결(법인재산 임대 신청서 제출 및 승인, 09장 참조)
5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	관할 등기소·세무서 / 온라인	창업 승인 후 6개월 이내 사업 개시, 기한 내 개시가 어려운 경우 사업 개시 유예 신청
6	사업자등록증 제출	창업지원단	기업 설립 사실 대학에 신고
7	벤처기업 확인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벤처기업 확인 신청
8	겸직 신청	소속 대학(원) → 교무과 (교원인사위원회)	‘유형 가’로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겸직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03장 참조)

※ 창업기업 설립 전 사전 심의(창업 승인)를 받는 것이 원칙이며, 사전 검토 과정에서 보완이 요청되면 신청한 차수의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창업 예정일까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 신청 자격·유형·제출 서류는 03장 [2], 신청서 작성 방법 및 심의 기준은 04장, 학내 공간 활용은 09장 참조

CHAPTER

03

교원 창업 시 유의사항

01 사전 검토

02 요건 및 신청서 제출

03 주식출연

04 이해상충 문제 확인

05 창업기업 변경, 창업 승인 취소 및 유예

1 사전 검토

구분	검토 사항	안내 부서
형식적 요건	신청 요건: 전임교원 및 기금교원, 부교수 이상 또는 3년 이상 근속, 3년 미만 조교수 중 규정 요건 충족 타 기관 사외이사 등 겸직 여부(2개 기업까지, 지분 참여만 하는 경우 해당 없음) 대학과 이해상충 여부(학생 참여, 학내 장비·공간 활용, 직무발명 신고·기술이전)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지원팀 02-880-2226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창업기업 활용 기술 목록 및 직무발명 등록 여부, 관련 연구과제 현황, 활용 범위, 기술이전 계약 필요성·범위·기술료 사전 협의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 02-880-7890
기술지주 지원	자회사 참여 의사, 투자 가능 여부, 지원 프로그램 안내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02-880-2027, 2030, 2039

2 요건 및 신청서 제출

근거: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
안내: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지원팀(02-880-2226)

신청 자격

- 본교 소속 전임교원 또는 기금교원으로서
  - 부교수 이상 또는 본교 3년 이상 근속 교원
  - 3년 미만 근속한 조교수는 ① 기술의 특성상 창업의 시급성이 인정되고 ② 국가 산업 발전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며 ③ 본교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모두 만족하면 신청 가능

신청 유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창업으로서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며, 신청 유형이 다수인 경우 전부 기재

유형	내용	근거
㉮ 임원 취임	창업자가 창업기업의 대표 등 임원(대표이사, 등기된 사내이사 등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자*)에 취임하는 경우	규정 제2조제1호가목 시행세칙 제3조제1항
㉯ 주식 20% 이상 소유	창업자 또는 창업자와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지분 포함)을 합하여 창업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는 경우	규정 제2조제1호나목 시행세칙 제3조제2항
㉰ 지배적 영향력	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특별관계인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로서 총장이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경우***	규정 제2조제1호다목 시행세칙 제3조제3항

* 명칭이나 직함을 불문하고 창업기업을 대표하는 사람(대표이사, 이사, 상근감사, 합명·합자·유한책임회사 사원, 지배인 등)

** 특별관계인(시행세칙 제3조제2항): 배우자(사실혼 포함),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창업자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생계를 함께하는 사람, 창업자 단독 또는 위 관계인과 합하여 30% 이상 출자하거나 임원 임면 등 중요 경영사항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단체 및 그 임원 등 → 가족 명의 지분도 20% 산정에 합산됨

*** 대표자 임면 또는 이사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 선임, 주요 경영사항·업무집행에 대한 지배적 영향력 행사

제출 서류

구분	서류	작성·제출 기준
1. 공문	창업 승인 신청 공문	창업 신청 유형(㉮ 임원 취임 / ㉯ 주식 20% 이상 소유 / ㉰ 지배적 영향력) 반드시 기재, 다수 해당 시 전부 기재
2. 공문 첨부	창업 승인 신청서(창업 사업계획서 포함)	부록 서식 ①~⑧, 소속 대학(원)장 직인 날인
	확약서	'유형 나'에 단독으로 해당하는 경우에만 [별표 2], 그 외 [별표 1] (부록 서식 ⑨)

- 제출 방법: 교원의 소속 대학(원)을 경유하여 창업지원단에 공문으로 제출하며, 원본도 소속 대학(원)에서 창업지원단(32-1동 2층)으로 제출

※ 본교 교원 2인 이상이 공동창업하여 위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교원 모두 신청 서류 제출(예: A 대표이사, B 임원, C 주식 20% 이상, D 지배적 영향력 → A~D 교원 모두 제출하며, 각 창업교원이 주식 5%에 대해 연대 출연)

심의 및 발표

- '유형 가'(임원 취임)에 해당하는 교원은 창업지원위원회 현장에서 창업계획 및 질의사항에 대해 직접 발표(약 5~10분)하므로 PPT 등 발표자료 준비
- '유형 나', '유형 다'는 별도 확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 발표 및 질의응답 참석을 요청할 수 있음
- 위원회 일정 및 발표자료 제출 방법은 별도 안내하며, 승인 결과는 위원회 후 별도 통보

보완 절차

- 사전 검토 과정에서 신청서류 및 내용 보완이 요청될 수 있으며, 보완되지 않으면 신청한 차수의 위원회에 상정되지 않을 수 있음
- 필요 시 전문가 멘토링을 통해 사업성·기술성·사업계획서를 보완하며, 원스톱 창업상담창구(창업지원단)를 통해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가능

3 주식출연

- 목적: 창업교원으로부터 출연받은 주식을 통해 학내 창업 지원 선순환 생태계 구축
- 근거: 규정 제17조, 시행세칙 제4조~제8조 / 안내: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지원팀(02-880-2226)
- 창업교원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교원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출연(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5%에 달할 때까지)
- 출연 대상: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또는 법인이 지정하는 자
- 출연 의무는 보유지분과 무관: 창업교원은 출연 당시 본인의 창업기업 보유지분비율과 관계없이 출연한도에 해당하는 주식 출연 의무를 부담함(시행세칙 제5조제1항) → 임원으로만 취임하고 본인 지분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출연 의무가 동일하게 발생
- 공동창업 시 연대 의무: 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교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 각 창업교원은 연대하여 출연 의무를 부담함(시행세칙 제5조제2항) → 교원별로 각각 5%가 아니라 기업 단위 출연 의무를 함께 지는 구조이므로, 교원 간 분담 방식을 사전에 협의해 두는 것이 바람직

※ 연대 출연 규정은 2022. 11. 4. 시행세칙 개정 전에 공동창업하였으나 출연을 완료하지 않은 교원에게도 적용되며, 개정 전에 적법하게 출연된 주식은 반환하지 않음(시행세칙 부칙 제2조·제3조)

- 의무사항 미이행 시 창업지원 중단 또는 창업승인 취소 가능(확약서 제출 사항)

창업교원이 보유주식을 매각할 때: 매도통지와 동반매도권 (시행세칙 제6조)

- 적용 범위: 창업교원이 보유한 창업기업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양도·이전·교환(이하 '처분')하려는 경우
- ① 매도통지: 처분 전에 학교에 서면으로 ㉠ 해당 창업기업, ㉡ 처분 대상 주식 수, ㉢ 1주(좌)당 예정 처분가격, ㉣ 처분 예정일, ㉤ 기타 주요 처분 조건을 통지
- ② 동반매도권: 학교가 매도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출연 주식을 보유한 수증자(학교 또는 학교가 지정한 자)는 교원의 처분 조건과 최소한 동일한 조건으로 자신의 주식도 함께 처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③ 동반매도권 행사 시: 교원은 통지한 조건대로 수증자의 주식도 매수인에게 처분되도록 하여야 하며, 매도희망 수량이 매수인의 매수 수량을 초과하면 매수인의 양해 하에 교원과 수증자가 지분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처분
- ④ 미행사 시: 수증자가 30일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불행사 의사를 통지하면, 교원은 그날부터 3개월 이내에 통지한 조건(또는 교원에게 더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3개월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면 매도통지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

※ 구주매출, 투자 유치에 따른 지분 양도, M&A 등으로 보유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매도통지 후 최소 30일의 동반매도권 행사기간을 일정에 반영하고, 투자계약 협상 단계에서 해당 의무를 투자자에게 미리 알리는 것이 좋음

학교(수증자)가 출연주식을 매각할 때: 창업교원의 우선매수권 (시행세칙 제7조)

- 수증자가 출연받은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려는 경우 창업교원에게 서면으로 매도통지(대상 기업, 주식수, 예정 가격, 예정일, 주요 조건)를 하여야 함
- 창업교원 또는 창업교원이 지정하는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음(원칙적으로 처분 대상 주식 전부를 매수하는 경우에만 행사 가능하며, 제3자 매수인과 일정 비율로 나누어 매수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일부 매수도 가능)
- 창업교원이 30일 내에 행사하지 않거나 불행사 의사를 통지하면, 수증자는 3개월 이내에 통지한 조건(또는 제3자에게 더 유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처분 가능

이사회 안건 사전 통지 (시행세칙 제8조)

- 임원 취임(유형 가) 또는 지배적 영향력(유형 다)에 해당하는 창업교원은 창업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수증자에게 서면으로 사전 통지하여야 함

- 확약서 구분: [별표 1](유형 가·다) 교원은 주식출연, 매도통지·동반매도, 이사회 안건 사전 통지를 확약하고, [별표 2](유형 나 단독, 주식 20% 이상 소유) 교원은 이사회 안건 통지를 제외한 주식출연과 매도통지·동반매도를 확약함(시행세칙 제4조)
- 출연 의무 면제(규정 제17조제3항):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기술지주 자회사가 되는 경우, 또는 산학협력단에 출연한도 이상의 주식출연이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주식출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 Q. 지분 없이 대표이사로만 취임해도 주식을 출연해야 하나요? → 예. 출연 의무는 보유지분비율과 무관하게 발생합니다(제5조제1항).
- Q. 교원 3명이 공동창업하면 각자 5%씩 출연하나요? → 아닙니다. 기업 단위 출연 의무를 창업교원이 연대하여 부담합니다(제5조제2항).
- Q. 배우자나 자녀 명의 주식도 '주식 20% 이상 소유' 판단에 포함되나요? → 예. 특별관계인이 소유한 주식은 누구 명의이든 합산합니다(규정 제2조제1호나목, 제3조제2항).
- Q. 제 주식을 팔 때 학교 승인이 필요한가요? → 승인 절차는 아니지만, 처분 전에 학교에 서면 매도통지를 하고 30일의 동반매도권 행사기간을 거쳐야 합니다(제6조).
- Q. 학교가 출연받은 주식을 외부에 팔 수도 있나요? → 가능하지만, 창업교원(또는 교원이 지정하는 자)에게 30일간 동일 조건의 우선매수권이 먼저 주어집니다(제7조).
- Q. 기한 내 출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확약서에 따라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4 이해상충 문제 확인

- 창업 교원과 학생·연구원, 대학, 창업기업 간 이해상충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여 기술사업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관계	창업 교원 → 상대방	상대방 → 창업 교원·기업
학생 및 연구원	교육·논문지도	연구 참여 / 창업기업 참여 시 연구비·근로계약에 따른 인건비 지급
대학(산학협력단)	주식출연, 발전기금 납부, 재정 기여, 기술이전료	창업승인, 겸직허가, 인프라(공간·장비) 제공, 특허권 사용 허용
타 교원	업무공백 발생	업무공백 대체
교원 창업기업	창업기업 참여	경영이익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 자발적 의지에 따라 참여해야 하며, 정당한 근로계약 체결 및 임금 지급·4대보험 가입 필요
- 총장 발령 연구원은 원칙적으로 겸직 금지로 창업기업 참여 불가

교내 공동활용 연구장비 이용 / 학내 공간 활용

- 학교 소유 연구장비 및 실험실습 기자재 이용 시 공동활용 연구장비로 등록 후 사용료 납부(「서울대학교 연구장비 공동 활용 관리 규정」,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 교수 연구실 등 학내 공간을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 창업 승인 후 소속 대학(원)·연구시설과 공간 임대차 계약 체결(법인재산 임대신청서 제출 및 승인, 09장 참조)
- 특허 등 지식재산권: 본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은 SRnD를 통해 직무발명 신고하고, 창업기업에서 활용할 경우 기술이전 계약 체결(05장 참조)

창업 교원의 복무

- '창업 승인'과 '겸직 승인'은 별개 절차로, '유형 가'로 창업 승인을 받은 교원은 반드시 겸직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함
- 절차: 소속대학(원) 인사위원회 경유 → 대학본부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 구비서류: ①겸직 신청서 및 확인서 ②겸직기관 허가요청공문 ③중소기업확인서 또는 벤처기업확인서 ④사업자등록증 ⑤공증각서 또는 임원배상책임보험증권 ⑥법인등기부등본 ⑦정관 ⑧창업승인 공문
- 사외이사등 겸직은 1인당 2개 회사 이내, 모든 대외활동 시간이 총 근무시간의 1/5 이하(주당 8시간 이내)이어야 함
- 사외이사 및 감사 겸직 시 겸직기간 및 종료 후 2년 이내 해당 회사로부터 연구용역 수탁 금지
- 겸직허가 교원은 그 해 겸직이력이 있는 모든 회사로부터 받은 금전적 지원 총액(원천징수영수증 세전 금액) 중 2천만원 초과 금액의 15%를 발전기금으로 출연하고 이듬해 1월 보고
  - 창업교원이 출연한 주식의 액면금액은 위 발전기금 출연액 산정 시 공제(주식을 출연한 해당 연도 1회, 규정 제17조제4항)

경업금지에 관한 사항

- 민간 연구과제, 민간기업 겸직 이후 창업 시 영업비밀 누설·기술 유출 등 경업 관련 이슈가 없는지 검토하여 진행

창업자의 의무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장)

- 업무공백 보완: 창업활동에 따른 소속 대학·연구소 등의 학생 교육·지도 및 연구활동 공백을 보완(제19조)
- 학생 지도: 학생의 교육에 도움이 되는 경우에만 학생을 창업기업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법령 준수(제20조)
- 시설물 사용: 본교 시설물(장비 포함)은 총장 허가 없이 제3자에게 대여·양도할 수 없으며, 고의·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제21조)
- 자료 제출 및 정보유출 금지: 학교의 자료제출 요구 시 기업현황조사표(별지 3 서식) 등 제출(제23조), 창업 관련 본교 정보를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제공 금지(제24조)

5 창업기업 변경, 창업 승인 취소 및 유예

- 창업기업 변경: 상호·대표자 변경, 주요 사업 내용 변경, 법인 전환, 사업자등록증상 변경 등 중요사항 변경 시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창업지원단에 신고(사업자등록증 첨부)(제13조)
- 승인 취소: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운영, 승인 후 6개월 이내 사업 미개시(유예 승인 시 제외), 본교 기밀 누설·손해, 지원사항 악용, 의무 미이행, 직무수행에 현저한 부정적 영향, 학교 명예 손상 → 창업 사유의 휴직 또는 겸직 승인 취소(제12조)
- 사업 개시 유예: 창업 승인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창업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사업 개시가 어려운 경우 별지 2 서식(사업 개시 유예 신청)을 창업지원단에 제출하여 유예 승인을 받아야 함(제12조제1항제2호)

CHAPTER

04

창업승인 신청서 작성

01 신청서 작성 방법

02 교원 창업 심의 기준

1 신청서 작성 방법

※ 창업지원위원회 심의자료이므로 누락 없이 상세히 작성 (서식은 부록 ①~⑨ 참조)

- 창업지원단이 교육기구(학과(부)), 대학·본부 주관연구소, 학내 창업 유관기관에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안내」 공문을 2개월마다 발송하며, 공문 붙임(작성 방법 및 제출 안내, 가이드북, 신청 서류, 관련 규정·시행세칙)을 참고하여 작성
- 서식 원본: https://rule.snu.ac.kr →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

서식	작성 방법
① 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자 직급 및 임용일자 반드시 기재, 창업(예정)회사 관련 내용 중 확정되지 않은 사항은 '미정'으로 기재, 소속 대학(원)장 직인 날인 (창업기간 추진계획) 서식의 유의사항 4가지 반드시 작성: ① 직무발명 신고, 기술이전 계획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② 연구실과 창업기업과의 분리 방안 ③ 교육 및 연구의 누수 방지 방안,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관리 방안 ④ 창업기업으로서의 학교 자산 장비 사용 시 장비소관 기관(부서)로의 사용료 납부 및 관리 방안
② 사업계획서 표지	작성자 소속·직급·성명·연락처·E-mail 기재.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며, 기재사실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
③ 창업계획 요지	창업 사업계획서 전체를 요약하여 1페이지 이내, 개조식으로 작성
④ 1. 창업자 인적사항	창업기업 대표자 인적사항 작성. 신청 교원이 대표자가 아닌 경우 대표자와 함께 신청 교원 인적사항 추가 작성(대표자 인적사항 다음 장에 같은 양식), 대표자 2인 이상 공동창업은 공동 대표자 모두 작성 (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 대표자와 관련 있는 대표 연구과제를 적고, 창업기업과 연관될 경우 비고란에 '창업 기술 관련 연구' 기재
⑤ 2.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 현황) 신청자를 포함한 창업기업의 경영진 및 기술진 작성 (설비현황) 학교 기자재 활용 시 장비명 뒤에 '(학교 자산)' 추가 기재, 학교 연구 장비를 창업기업에 활용할 경우 장비 사용 비용 납부 필요
⑥ 3. 기술개발 사업계획	창업 관련 특허 내용 상세 기재(출원일자, 대표발명자, 기술이전 이력 등), 기술이전 계획이 있는 경우 특허명 및 계획 상세 기재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올바른 직무발명 신고로 지식재산권의 부적정 귀속을 예방하기 위해, 출원(예정)·등록 특허 활용 전 예비출원 절차를 산학협력단 지식재산관리부서와 사전 협의(창업 심의 시 '창업기술의 적격성'을 검토하므로 발명(예정) 기술을 대학에 특허·노하우 형태로 출원·등록 필요) (투자유치계획) 기술지주 자회사 참여 계획, TIPS 투자 유치 관련 사항, 외부투자자 참여 여부, 지분 관계 등

서식	작성 방법
⑦ **4. 시장 현황**	국내 및 세계 시장 규모를 대략적으로 파악 가능하도록 기재(작성근거 반드시 기재), 주요 수요처, 경쟁업체 현황, 판매전략, 판매계획
⑧ **5. 향후 추진계획**	(향후 추진일정 계획) 기술지주 참여 계획, 기술이전 계획, 학교 재정기여 계획 등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창업기업 참여 인력 간 자본금 출자구조 및 지분구조 반드시 포함
⑨ **확약서**	창업 유형에 맞는 확약서 선택 작성: [별표 1] 규정 제2조제1호 가목·다목 / [별표 2] 나목 단독 해당

2 교원 창업 심의 기준

평가기준	검토항목
승인	(기술성) 단순 개업[1]이 아닌 연구개발성과물 활용 창업, 특허·노하우로 확보 가능한 연구결과물로 사업화 가능성 높음 (타당성) 창업 목표·의지 뚜렷, 연구 경력과 창업 업종 부합, 인력·인프라 활용의 이해상충 없음, 본교 기여 방안 구체적 (사업성·성장성) 사업·인력·자금·설비 계획, 수요처·경쟁·판매전략·법적문제 분석을 통한 사업성, 국가·사회 기여 가능성 (기타) 사업계획서 작성·발표·질의응답의 충실성
조건부 승인	일부 보완이 필요한 경우. 요건 충족 시 재심의 또는 위원장 결정에 따라 진행
불승인	기술 기반이 아니거나 연구개발성과물을 활용하지 않는 창업, 전체적 보완 필요, 대학 연구개발과제 형태로 진행 가능한 경우

1) 단순 개업: 교원의 전공·보유기술·직무경험과 무관한 창업, 또는 관련은 있으나 교육·컨설팅·자문업·전문자격 활용·용역 수행이 주가 되는 창업, 기술실용화로 보기 어렵거나 시장 차별화가 낮은 창업

CHAPTER

05

지식재산권 및 기술이전

01 직무발명

02 기술이전

0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주요 사례

1 직무발명

목적 본교 직무와 관련된 발명은 산학협력단에 직무발명 신고 의무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지식재산관리부(02-880-7890)

직무발명 신고 유의사항

- 창업 및 겸직 승인 이후라 하더라도 본교 교직원 등의 직무와 관련된 발명 창출 시 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승계함

※ 본교 교직원 등(교원, 조교, 직원, 연구원,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학생, 수료생 포함)의 발명에 대한 신고 누락 또는 사후 신고가 되지 않도록 유의

직무발명 신고 절차

- 연구행정정보시스템(SRnD)을 통해 온라인으로 발명신고 제출 및 권리승계(발명자 전원 동의)까지 완료

※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제6조(지식재산의 귀속) ①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및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산학협력단이 승계한다. / 제7조(직무발명의 신고) ① 발명자는 직무발명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발명의 내용을 단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발명신고

- 직무발명의 범위
  - 본교의 연구시설이나 인력을 활용하여 교직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창출한 지식재산
  - 본교(산하 법인) 또는 정부부처 등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과제를 수행한 결과로 창출한 지식재산
  - 법률이나 제3자와의 연구용역계약에 의하여 그 권리가 본교에 귀속된 지식재산 등
- 지식재산권 귀속: 본교의 직무발명으로 창출된 지식재산권은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며 발명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짐

단계	내용
① 발명신고서 작성·권리 승계	SRnD에서 발명신고 후 본교 소속 발명자 전원이 산학협력단으로 권리 양도 (발명자 진행)
② 발명신고서 접수	산학협력단 담당자가 검토·접수 후 특허 대리인 사무소에 출원 업무 의뢰

단계	내용
③ **선행기술조사·발명상담·명세서 작성**	산학협력단 및 대리인 사무소에서 선행기술조사 및 발명자 상담 후 특허명세서 및 필요서류 준비
④ **특허 출원**	대리인 사무소에서 특허청에 출원서 제출 후 출원번호통지서 수령
⑤ **중간사건 처리**	특허청 의견제출통지 시 의견서·보정서 등 제출
⑥ **특허 등록·권리 유지**	등록결정 후 산학협력단이 등록료 납부·설정등록, 연차등록료 납부로 권리 유지

※ 정규출원 비용: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 간접비, 연구자 마일리지, 연구과제 직접비, 발명자 자체 부담 등

※ 예비출원: 발명 내용 공개가 임박한 경우(논문 출판, 학회 발표 등) 또는 대표발명자의 특허지원간접비가 부족한 경우 예비출원(청구범위유예제출/임시명세서 제출)으로 신속 출원 가능, 이후 정규출원은 우선권주장출원으로 진행

특허심의

- (특허심의 대상) 본교가 기술사업화를 주도할 수 있는 직무발명 및 발명자가 심의를 신청한 경우
- (심의 제외) 예비출원·긴급출원(1개월 이내 출원 건), 영리기관 또는 창업기업 공동소유 건(기업체가 특허비용 전액 부담, 기업체 결정에 따라 후속 출원), 타 비영리기관이 최대지분권자인 공동소유 건
- (특허심의위원회) 우수특허 발굴, 기술사업화 효율화 등을 위해 운영되며 심의 결과에 따라 해외출원 등을 지원
- (진행 절차) 국내출원 발명신고 및 특허심의 신청 → 전담사무소 국내출원 의뢰 → 특허심의 의사 최종 확인 → 전담사무소 선행기술조사 의뢰 → 특허심의 진행(서면·발표평가) → 특허심의 결과보고 → 대표발명자에게 결과 안내 → 해외출원신청서 접수

등급	진행 내용(재원)	등급 설명
S	국내, PCT, 해외 2개국 (산학협력단 예산)	원천성이 우수하고 미래 기술 분야를 혁신·주도할 수 있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매우 높은 기술
A	국내, PCT, 해외 1개국 (산학협력단 예산)	특허성이 우수하고 기존 기술 대비 높은 차별성을 나타내는 기술 또는 기술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
B	별도 지원 없음	기존 기술 대비 차별성이 높지 않고 근시일 내 사업화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 B등급 기술에 대해 발명자가 해외출원을 희망할 경우 대표발명자별 특허지원간접비 계정에서 차감. 발명자가 특허심의를 신청하지 않은 건은 기존 방식으로 진행

No	전담특허사무소 선정 분야	세부 분야	기관 수
1	전자소자	소자 구조/반도체/디스플레이/광학	1
2	통신·프로그램	소프트웨어/영상처리/신호/전파	2
3	바이오	진단/의약/식품/화장품/의료데이터/의료용품	2
4	화학·재료	화학/소재/공정	2
5	기계·환경·건설	기계(장치, 설비)/에너지/환경/건설/기타	2

※ 전담 특허사무소는 공개입찰을 통해 복수 선정

전략특허

- 정의: 특허성, 원천성, 기술성 및 사업성 등이 매우 우수한 출원(예정) 기술로서 산학협력단이 주도하여 특허 분석·포트폴리오 설계를 통해 전략적으로 확보한 특허
- 심의 대상: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실무위원회 발굴 기술 / 심의 방식: 특허심의위원회 발표평가

유형	지원 내용	설명
A형	국내외 출원 지원	원천성·기술성·사업성이 매우 우수하여 적극적인 해외출원이 필요한 기술
B형	국내, PCT, 미국	미래유망기술 기술군에 포함되는 우수기술로 중장기적으로 사업화·산학협력·창업 가능성이 있는 기술

※ 미래유망 기술군: 차세대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BT-IT 융합, 인공지능·데이터, 플랫폼 바이오, 레드 바이오, 그린·화이트 바이오, 개량 및 혁신신약, 차세대 이차전지, 우주산업 관련 기술

산학협력단 안내부서 연락처(대표 발명자 교수 소속 기준)

구분	대상	연락처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출원	공과대학(전기정보/컴퓨터공학)	02-880-7890
	공과대학(전기정보/컴퓨터공학 외)	02-880-7891
	의대/치대/간호대	02-880-2263

구분	대상	연락처
	그 외 대학	02-880-2263
기타 지식재산권	저작권(프로그램/일반), 노하우	02-880-7890
	품종보호, 균주/미생물 기탁	02-880-2263
기술이전		02-880-2028, 2038, 2026

2 기술이전

목적: 창업자가 직무발명으로 본교에 귀속된 기술 또는 그 외 본교 보유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 체결 필요
안내부서: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전략사업부(02-880-2028, 2038, 2026)

- 기술이전 대상: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노하우(물질합성공정, 측정방법 등), 기타(유전자 정보, 균주, 실험실에서 합성한 특수화학물질 등은 물질이전계약을 통해 이전)
- 유의사항: 본교 소유 기술을 이용한 창업의 경우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에 따라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계약 체결이 필수적임
- 기술이전 방식
  - 기술(특허) 양도: 소유권을 넘기는 방식으로 후속연구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특별한 경우에만 실시
  - 전용실시권(독점실시권): 특정 기업에게만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절반 이상의 기술이전계약이 이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통상실시권: 여러 기업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식으로 제약 분야 등 다수의 수요기업이 있는 기술에 사용

단계	내용
양해각서 체결	기술이전의 일반적 절차를 규정. 수요기업을 처음 만날 경우(특히 외국기업) 주로 체결하며, 국내기업과는 주로 비밀유지계약부터 체결. 법적 구속력은 거의 없음
비밀유지계약 체결	논문·특허로 공개되지 않은 노하우, 실험자료 등을 기업에 공개하기 전에 반드시 체결
기술실사	기업 관계자가 대학 보유 기술의 유효성 등을 검증(due diligence)

단계	내용
조건협상	실시권 종류(양도·전용·통상), 계약기간, 기술료 협상. 연구자는 투입 연구비, 기술개발 난이도, 희망 기술료 규모 등을 지식재산관리 담당 부서에 알리고, 실제 협상은 기업과 산학협력단 간 진행. 정부과제 결과물은 과제 규정 확인 필요. 연구자는 기술 설명만 하고 협상은 대학이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계약체결	서울대학교 표준 기술이전계약서 사용. 침해보증·사업성 보장 등 학술 연구결과로 보장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한 대학의 요구사항을 명시
기술료 징수·배분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 제4조(발명자 보상금)」 정액기술료 또는 선급+경상기술료. 정부과제 결과물은 해당 부처 규정에 따라 배분(선공제: 실시료의 60% 발명자 보상금, 기술사업화 경비 및 지식재산권 권리화 비용(실시료의 15%이상), 기술이전 기여자 성과금(실시료의 10%이상)/ 후배분: 잔액의 3/5 기관경비, 나머지 추가 발명자 보상금). 비정부과제는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지침에 따라 Scale Sliding 배분 (2,000만원 이하 100:0 / 2,000만원~1억원 80:20 / 1억~5억원 70:30 / 5억원 초과 50:50)
발명자 보상 / 사후관리	「서울대학교 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및 「서울대학교 실시료 분배 지침」에 따른 발명자 보상, 계약이행 점검, 경상기술료 징수를 위한 매출액 확인, 정부부처 기술이전 실적 보고

3 직무발명 부적정 특허출원 주요 사례

사례	내용	올바른 처리
1. 연구과제 성과물을 교원 관련 회사 명의로 출원	본교 연구과제 성과물 또는 과제 참여 교원이 발명자인 특허를 교원 관련 회사 단독 명의로 출원	연구계약에 따라 산학협력단 소유로 출원(정부과제 성과물은 소관 부처·감사원 등이 정기 추적)
2. 대학과 회사 공동 출원	교원 연구개발 범위의 특허를 대학과 교원 관련 회사 공동 명의로 출원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고 발명 즉시 직무발명 신고
3. 교원 미참여 발명으로 회사 단독 출원	연구참여 교원을 발명자에서 누락하고 회사 명의로 출원	산학협력단 소유로 하고 발명 즉시 직무발명 신고
4. 연구실 노하우 무단 사용	직무발명 기술을 권리화하지 않고 노하우 상태로 기술이전 계약 없이 회사가 사용	직무발명 신고 후 산학협력단과 기술이전 계약
5. 정부과제 성과물을 민간과제 성과물로 변경 출원	정부과제와 유사한 민간과제를 수주하여 성과물을 민간과제 성과로 출원	정부과제·민간과제 성과물을 명확히 구분하여 출원
6. 회사 소속 허위 발명자 공동 출원	교원 발명에 회사 임직원을 허위로 포함하여 공동 출원	진정 발명자만 등재(허위 발명자 승계는 특허무효 원인, 보상금 분쟁 가능)

CHAPTER

06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01 소개

02 투자/회수 프로세스

1 소개

- 유망기술을 사업화하여 사회에 기여하는 성장성 높은 기업의 설립·발굴·투자·육성 기관(액셀러레이터, TIPS 운영사)

구분	주요 현황
액셀러레이터	초기창업투자 및 전문보육 창업기획자 등록(2018. 2.)
조합 결성 및 투자	운용자산 약 1,200억원, 2025년 31개사 74억원 투자, 2026년 모태펀드 창업초기소형·교육부 대학창업펀드 운용사 선정 / 14개 펀드, 포트폴리오 230개사 이상 / 2026년 신규 투자펀드 3건(약 171억원) 결성: 중기부 창업초기 모태펀드(약 60억 원), 교육부 대학창업 모태펀드(약 60억 원), 서울대기술지주-SFi 개인투자조합(51.3억 원)으로 바이오·딥테크·AI 분야 학내 유망 창업기업 집중 투자('26. 6.)
투자 전문 구조	투자 전문인력 충원, 조직 전문성 강화, 규정 제·개정을 통한 내부관리 강화, 과기정통부 기술경영촉진(컴퍼니빌더 지원형) 사업 주관기관(2026) / 컴퍼니빌더 사업: 매년 9.5억 원(5년간 총 47.5억 원) 규모로 우수기술 발굴·기획창업·보육·투자연계 체계 구축('26. 4.)
TIPS	TIPS 선정 누적 101개사 이상, 경기도형 팁스 '경기도 WINGS' 운영사

* TIPS: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2026년 일반트랙 2년간 최대 8억원)

- Vision: 서울대 및 외부 우수 IP를 활용한 성장 가능성 높은 기술창업기업 투자·육성

2 투자/회수 프로세스

- (기술지주 협의) 기술지주 사전협의 → 예비심사 → 사업설명회(IR) / (내부 투자 프로세스) 기업 실사 및 검토 → 본심사 → 최종 투자결정 → 투자계약 및 실행 → 가치 증대
- 창업지원위원회 사전·사후 사업성 검토 협의: 사업성 검토, 자회사 편입·펀드투자 등 투자 구조 협의·제안
- 투자심사: 재무·법률·운영·기술성 검토, 후속투자 유치 가능성 및 정책 프로그램을 통한 성장성 검증
- 투자 후 연계: TIPS, TMC(대학기술경영촉진사업) 등 R&D·사업화자금, S-Innovation Center 사무공간, 기술보증기금 U-Tech Valley·신용보증기금 Campus Start-up 등
- 투자/회수 4단계: 발굴 및 창업(~2년차) → 투자 집행(~4년차) → 성장 지원(~6년차) → 투자 회수(3~7년차, 구주매각·M&A·IPO, 회수 후 재투자 선순환)
- MOU 체결 30여 개 투자기관(VC)과 공동투자
- 연락처: 02-880-2027, 2030, 2039, invest@sth.ac.kr

CHAPTER

07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

01 법인 설립 절차

02 사업자등록 및 기타 절차

1 법인 설립 절차

단계	절차	주요 내용
설립준비	사업계획서 작성	사업규모, 기업형태, 창업멤버와 조직구성, 자금계획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발기인 모집	주식회사 설립을 기획·추진하는 주체 모집
법인설립	정관 작성 및 인증	회사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기본규칙을 기재한 서면. 공증인 인증(발기인 전원 기명날인). 자본금 총액 10억원 미만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 각 발기인의 기명날인(서명)으로 효력이 생겨 공증 생략 가능(상법 제292조)
	주식발행사항 결정·주식인수	발기설립/모집설립 결정, 발행주식수·발행가액 결정, 발기인의 주식인수
	주금납입·현물출자	주식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정은행에 납입.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은 주금납입증명서를 은행 잔고증명서로 대체 가능(상법 제318조). 기술·특허 현물출자 시 감정인 감정 또는 법원 검사인 조사
	이사·감사 선임 및 창립총회	이사 1명 이상 선임(자본금 10억원 미만 회사는 이사 1~2명, 감사 선임 생략 가능(상법 제383조, 제409조)). 모집설립 시 창립총회 개최
법인등록	법인설립 등기	설립 절차 완료 후 2주 이내 본점 소재지 관할 등기소 또는 온라인(인터넷등기소,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 www.startbiz.go.kr)
	사업자 등록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본점 관할 세무서(또는 홈택스) 신청

2 사업자등록 및 기타 절차

구분	내용
등록기한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미등록 시 불이익	공급가액 합계액의 1% 가산세 부과, 매입세액 미공제
구비서류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정관, 임대차계약서, 도면(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적용 건물 일부 임차 시),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인허가 사업의 경우 허가·등록·신고필증, 현물출자명세서, 자금출처명세서 등 ※ 업종·설립형태 등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청될 수 있음

구분	내용
발급처	관할세무서(홈택스 온라인 신청 가능),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교부(현장 확인 필요 시 연장 가능)
부동산등기(관할 등기소)	신청서, 등기원인 증빙서류,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권한 증빙서류, 등기필정보 등
취업규칙 신고(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신고서, 취업규칙, 근로자 과반수 의견서 ※ 상시 근로자 10인 이상인 경우 해당(근로기준법 제93조)
4대보험 성립 신고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https://www.4insure.or.kr)

CHAPTER

08

벤처기업 확인 신청

01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

02 벤처기업 확인 요건

03 벤처기업 확인 시 주요 혜택

1 벤처기업 확인 신청 방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기업을 '벤처기업'으로 정의하며, 일반적으로 첨단의 신기술과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사업에 도전하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의미
- 온라인 신청: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https://www.smes.go.kr/venturein)

2 벤처기업 확인 요건

확인 유형	기준 요건	전문평가기관	소요기간
벤처투자유형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적격투자기관으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액 합계 5천만원 이상 자본금 중 투자금액 비율 10% 이상(문화상품 제작자는 7% 이상)	한국벤처캐피탈협회	접수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
연구개발유형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중 1개 이상 보유 직전 4개 분기 연구개발비 5천만원 이상 및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율 5% 이상(업종별 기준 이상, 창업 3년 미만은 비율 미적용) 사업의 성장성 우수 평가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45일 이내
혁신성장유형	중소기업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은 기업	기술보증기금, 나이스평가정보,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평가데이터 등	45일 이내
예비벤처기업	법인설립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 중인 자 기술의 혁신성과 사업의 성장성 우수 평가	기술보증기금	45일 이내

※ 벤처기업 확인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료 전 재확인 필요 / 출처: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3 벤처기업 확인 시 주요 혜택

분야	내용
세제	(법인세·소득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2027. 12. 31.까지 확인분): 벤처 확인일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5년간 50% 감면. 감면대상 업종이어야 하며, 2025. 1. 1. 이후 확인분은 연 5억원 감면한도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2항·제13항) (취득세·재산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벤처 확인일부터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부동산 취득세 75% 경감, 재산세 3년간 면제 후 2년간 50% 경감(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임직원)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연간 2억원, 누적 5억원 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2)
금융	기술보증기금 보증한도 확대(일반 30억원 → 벤처기업 50억원, 벤처기업 이행보증·전자상거래담보보증 70억원, 기술보증규정) 코스닥 상장 심사기준 우대(예: 자기자본 30억원 → 15억원, 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이익 20억원 → 10억원 등,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입지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내 벤처기업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 37.5% 경감 벤처기업집적시설·신기술창업집적지역에 입주(설립)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취득세·등록면허세·재산세 중과세 적용 배제(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
M&A	대기업이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는 경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편입 7년간 유예(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인력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기준 완화(벤처기업 연구전담요원 2명 이상), 기업부설창작연구소·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기준 완화(3명 이상) 스톡옵션 부여 대상 확대(외부 전문가 등) 및 부여 한도 확대(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3)
광고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벤처·이노비즈·메인비즈 등 대상): 광고제작비 지원(2025년 기준 TV 50%·최대 4,500만원, 라디오 70%·최대 300만원) 및 방송광고비 할인

※ 세제 혜택은 업종·소재지·중복적용 배제 등 요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세무 전문가 확인 필요

CHAPTER

09

대학 창업공간 활용

01 학내 공간 활용 방법

02 창업보육공간 현황

1 학내 공간 활용 방법

- 승인 목적: 단과대학, 연구시설 등 학내 공간에 창업하고자 할 경우 법인재산 사용 허가 필요(학외 임대차 계약 시 불필요)
- 근거: 「서울대학교 재산관리규칙」
- 구비서류: 임대신청서(서약서, 각서 포함), 창업승인 공문, 임대 공간 평면도, 사업자등록증(발급 전이면 주민등록등본, 주민번호 뒷자리 비공개), (예비)벤처기업 확인서
- 처리부서: 단과대학·연구시설 공간 담당 행정실 / 총괄: 재정전략실 자산운영과(관악 02-880-2436, 비관악 02-880-5119)
- 임대 절차: 서류를 소속 대학(원)에 제출 → 임대 승인 통보(교원창업·창업보육센터 임대차계약은 해당 기관장 승인, 재산관리위원회 심의 불요)

2 창업보육공간 현황

- 창업보육공간으로는 1) 학내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창업보육센터(총 8개소, 17,047㎡), 2) 학외(관악구)에 위치한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총 5개소, 2,752㎡)이 있으며, 각 공간별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음
- 창업지원단 홈페이지 및 각 기관별 홈페이지 통하여 세부내용 확인 후 입주 신청

캠퍼스	보육기관(관리기관)	특화 유형	연락처 및 홈페이지
시흥	SNU시흥캠퍼스 창업보육센터	바이오, 의료	031-5176-2217, https://siheungcampus.snu.ac.kr
관악	서울공대혁신창업센터	공학 일반	02-880-4194, https://snuecc.snu.ac.kr/
수원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농생명	031-294-8526, https://agbio.snu.ac.kr
연건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바이오, 의료	02-740-8615, https://dentistry.snu.ac.kr
관악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바이오, 의료	02-880-8290, http://imbgbi.snu.ac.kr
관악	S-Innovation	분야무관	02-880-2030 https://snutechholdings.snu.ac.kr/incubator/
관악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943동)	분야무관	02-880-2225 https://snurnd.snu.ac.kr/?q=node/38
관악	산학협력단 창업보육센터(낙성대)	분야무관	02-880-2225 https://snurnd.snu.ac.kr/?q=node/38
교외(관악)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HERE-RO)	AI, 글로벌	070-7791-4473, https://campustown.snu.ac.kr

CHAPTER

10

교원 창업기업 지원 프로그램

01 SNU BIG SCALE UP (창업지원단)

02 SNU IR CLUB (창업지원단)

03 창업멘토링 (창업지원단)

04 경영지원서비스 (창업지원단)

05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산학협력단)

06 글로벌 진출 지원(CES·BIO-USA·MWC) (산학협력단)

07 동문창업네트워크 및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 (창업지원단)

창업지원단 및 학내 창업지원기관은 교원 창업기업을 포함한 서울대학교 구성원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성장(액셀러레이팅)·투자유치·경영지원·글로벌 진출·네트워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SNU BIG SCALE UP (창업지원단)

- 개요: 창업지원단이 직접 학내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아이템 검증부터 성장·자금조달(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대학 주도 성장지원(Accelerating) 플랫폼(2025년~). 매년 3~4월경 모집
- 대상: 서울대학교 교원·학생·동문 (예비)스타트업
- 지원: 성장 지원 파트너 투자사(AC/VC)와 창업 전담 멘토단이 참여하는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투자 연계, 데모데이 개최
- 성과: (2025) 147개 기업 지원·20개 선정, 11개 기업 총 114억 원 투자유치 / (2026) 246개 기업 지원·30개 선정, 5개사 총 31억 원 투자유치 및 투자확약('26. 7.)
- 홈페이지: https://snubigscaleup.com / 문의: 02-880-8985(창업지원단)

SNU IR CLUB (창업지원단)

- 개요: 서울대 교원·학생·동문 창업기업의 IR 및 투자자 네트워킹을 지원하는 대학 주도 기업설명(Investor Relations) 플랫폼(2025년~) / https://snuirclub.com
- IR Meet-up: 활발히 활동 중인 벤처투자자(VC·AC·CVC)를 초청하여 투자자 관점의 스타트업 성장 요인을 공유하고 학내 유망 창업기업과 연결 / 3~12월 월 2~3회
- IR OfficeHour: 투자사와 창업기업 간 1:1 개별 밋업(투자사별 3개 내외 팀, 팀별 최대 50분), 투자 검토·전문가 멘토링·SNU IR CLUB 네트워킹 행사 초대 / 대상: 서울대 교원·학생·동문 (예비)창업기업 및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 연 1회(10월경 모집)
- Startup IR Day: 투자기관·수요기관 대상 섹터별(반도체·로보틱스·바이오헬스케어 등) Closed IR / 문의: 02-880-8985(창업지원단)

창업멘토링 (창업지원단)

- 운영기간: 매년 3월경 ~ 차년도 1월경
- 대상(교원): 서울대 전임 또는 기금 교원으로 대학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자(창업지원위원회 등), 서울대 비전임 교원으로 2026. 3. 1. 기준 설립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된 사내이사로 창업한 자

- 지원: 창업 일반, 사업계획서 검토, 투자, 법률, 회계(세무), 노무, 지식재산권, 마케팅 등 전문가 1:1 상담 / 신청자 1인(1팀)당 최대 6회, 동일 전문가 매칭은 3회로 제한
- 신청: 창업지원단 홈페이지(startup.snu.ac.kr)
- 문의: 02-880-2217, startupsnu@snu.ac.kr(창업지원단)

경영지원서비스 (창업지원단)

- 운영기간: 2026. 4. ~ 2027. 1.(2026년 신청 4. 5. 마감, 선발 여부 개별 안내)
- 대상(교원): 서울대 전임 또는 기금 교원으로 대학으로부터 창업 승인을 받은 자(창업지원위원회 등), 서울대 비전임 교원으로 설립 5년 이내 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등기된 사내이사로 창업한 자
- 지원: 회계·세무 대행 서비스(회계처리, 부가세·소득세·법인세 신고, 결산·조정계산서 작성, 연말정산 등) 비용 지원 / 일반 창업기업 100만 원, 라이징스타기업 200만 원(부가세 포함) 한도 / 적격 여부 검토 후 최대 44개 기업 선정
- ※ 라이징스타기업: 최근 3년간 학내 창업경진대회·동문창업네트워크 입상기업, 창업지원단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빅스케일업 등) 수상기업
- 유의사항: 지원 한도 초과 금액은 신청자 부담, 법무·회계·세무 분야 단순 자문은 '창업멘토링' 이용
- 문의: 02-880-2217, startupsnu@snu.ac.kr(창업지원단)

실험실 특화형 창업선도대학 사업 (산학협력단)

- 개요: 대학 실험실이 보유한 우수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고부가가치 기술혁신형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혁신창업실험실을 선정하여 실험실 기반 기술창업을 지원
- 지원: 실험실 창업 사전기획(BM 수립·고도화) 및 연구개발비, 실험실 창업동아리, 분야별 성장지원 및 맞춤형 특화교육 / 연 사업비 12.6억 원, 혁신창업실험실 12개(전략형 8·일반형 4) 선정·지원('26. 7.)
- 문의: 02-880-2225(산학협력단 기술창업부)

글로벌 진출 지원(CES·BIO-USA·MWC) (산학협력단)

- 대상: 본교 우수기술 기반 창업기업(예비창업연구실, 기술지주 자회사·투자회사, 기술이전기업 중 벤처기업 등)
- CES: 서울통합관 참여를 통해 학내 연구성과 기반 기술창업기업의 글로벌 고객·파트너 발굴 지원 / 산학협력단 기술창업부(02-880-2223)

- BIO-USA: 바이오·신약·의료기술 분야 창업기업의 해외 비즈니스 마케팅 및 파트너링 지원 / 산학협력단 전략사업부(02-880-7892)
- MWC: 세계 최대 규모 ICT 전시회 참가 지원 / 산학협력단 전략사업부(02-880-7892)

동문창업네트워크 및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 (창업지원단)

- 서울대학교 동문창업네트워크(SAEN, 창업지원단): 2019년부터 매년 9월경 개최되는 학내 최대 규모 창업 네트워킹 행사로 동문 창업가·투자자·창업 유관기관 임직원 등 300명 내외 참석 / 창업지원단(02-880-8984)
- 혁신창업국가 대한민국 국제포럼(STARTUP NATION KOREA): 서울대학교·KAIST·중앙홀딩스가 공동 개최하는 국가 단위 창업 포럼으로, 딥테크 혁신창업 성공사례를 발굴·시상하는 '대한민국 혁신창업상' 시상 및 우수 창업기업 전시부스 운영 / 창업지원단(02-880-8985)

ANNEX

별첨

창업 지원 주요 사이트

01 학내

02 학외

학내

기관	주소
창업지원단	https://startup.snu.ac.kr
시흥캠퍼스본부	https://siheungcampus.snu.ac.kr
경영대학 벤처경영기업가센터	https://cba.snu.ac.kr
공과대학 서울공대혁신창업센터	https://snuecc.snu.ac.kr/
농업생명과학대학 농생명과학 창업지원센터	https://agbio.snu.ac.kr
첨단융합학부	https://snuti.snu.ac.kr
치의학대학원 덴탈메디케어 창업보육센터	https://dentistry.snu.ac.kr
생명공학공동연구원	https://bio-max.snu.ac.kr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https://aict.snu.ac.kr
유전공학연구소 유전공학특화 창업보육센터	https://imbgbi.snu.ac.kr
산학협력단 지식재산전략실	https://snurnd.snu.ac.kr
서울대학교 기술지주	https://snutechholdings.snu.ac.kr/
서울대학교 ANCHOR 사업단 캠퍼스타운사업팀	https://campustown.snu.ac.kr
ANCHOR 사업단(ANCHOR 사업팀)	https://rise.snu.ac.kr
SNU BIG SCALE UP(창업지원단)	https://snubigscaleup.com
SNU IR CLUB(창업지원단)	https://snuirclub.com
서울대학교 기후테크 창업 경진대회	https://snustartupchallenge.org

학외

기관	주소
중소벤처기업부	https://www.mss.go.kr
창업진흥원	https://www.kised.or.kr

기관	주소
K-Startup 창업지원포털	https://www.k-startup.go.kr
기업마당	https://www.bizinfo.go.kr
모두의 창업 플랫폼	https://www.modoo.or.kr
TIPS	https://www.jointips.or.kr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s://www.kosmes.or.kr
기술보증기금	https://www.kibo.or.kr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https://www.smes.go.kr/venturein
창업보육센터네트워크시스템	https://www.smes.go.kr/binet
창조경제혁신센터	https://ccei.creativekorea.or.kr
스타트업 창업지원 법무플랫폼	https://www.9988law.com/startlaw/web/main.do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https://www.k-ac.or.kr
한국벤처캐피탈협회	https://www.kvca.or.kr
벤처투자종합포털	https://www.vcs.go.kr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https://www.koef.or.kr
학생 창업유망팀 300	https://u300.kr

APPENDIX

부록

교원 창업 승인 신청 서식

번호	서식	비고
①	창업 승인 신청서	[별지서식] 개정 2017.10.13.
②	창업 사업계획서 표지	[붙임]
③	창업계획 요지	1페이지 이내
④	1. 창업자 인적사항	
⑤	2.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	
⑥	3. 기술개발 사업계획	
⑦	4. 시장 현황	
⑧	5. 향후 추진계획	
⑨	확약서 [별표 1]·[별표 2]	유형에 따라 택1

※ 실제 작성 및 제출 시에는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별지 서식(hwp) 사용 권장

부록 1

창업 승인 신청서

신청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급		임용일자	
창업(예정) 회사	기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설립(예정) 일자			자본금	천원	
	창업분야		업종/업태		고용인력	명
창업신청 사유						
창업기간 추진계획	(강의 및 학생지도, 연구계획 등) ※ 유의사항: 아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1. 직무발명 신고, 기술이전 계획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항 2. 연구실과 창업기업과의 분리 방안 3. 교육 및 연구의 누수 방지 방안, 학생·연구원의 창업기업 참여 시 관리 방안 4. 창업기업으로서의 학교 자산 장비 사용 시 장비소관 기관(부서)로의 사용료 납부 및 관리 방안					
추천사유	(기관장 추천)					

위와 같이 창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자: (서명 또는 인)

소속 대학(원)장: (인)

붙임서류: 창업 사업계획서 1부.

※ 창업에 따른 휴직 또는 겸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대학교 교원 인사 규정」을 따름

서 울 대 학 교 총 장 귀하

부록 2

창업 사업계획서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급		성명	
	연락처				E-mail	

※ 본 사업계획서는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하고, 기재사실과 실제 내용이 다른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음

부록 3

창업계획 요지

신청자	소속		직급		성명	
창업분야	□기계·재료 □전기·전자, 정보·통신, 컴퓨터, 인터넷 □화공·섬유 □의료·의약품 □생명·식품 □환경·에너지 □공예·디자인 □기타( )					
보유현황	자본금(천원)		인력(경영, 기술진)		활용기술건수	장비수
목적 및 개요						
창업추진 배경						
창업 기술 내용 및 운영방안						
시장현황 및 판매전략						
향후 추진일정 및 학교 기여 계획						

※ 내용은 개조식으로 작성 / 창업 사업계획서 전체를 요약하여 1페이지 이내로 작성

부록 4

1. 창업자 인적사항

※ 창업 신청 교원이 창업기업의 대표자가 아닌 경우, 신청 교원의 인적사항 추가 작성(대표자 인적사항 다음 장에 같은 양식으로 작성) - 이 설명은 작성 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table>
<tr><td rowspan="2">대표자</td><td>성명</td><td colspan="2"></td><td>생년월일
(남/여)</td><td colspan="2"></td></tr>
<tr><td>주소</td><td colspan="2"></td><td>연락처</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3">최종학력</td><td colspan="2">졸업년도</td><td>학교명</td><td>전공</td><td>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td><td>비고
(취득학위 등)</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rowspan="4">경력</td><td colspan="2" rowspan="2">근무기간</td><td colspan="2">근무처</td><td colspan="2" rowspan="2">담당업무
(최종직위)</td></tr>
<tr><td>근무처명</td><td>업종</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 colspan="2"></td></tr>
<tr><td>기타특기사항</td><td colspan="6">(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td></tr>
<tr><td rowspan="3">연구개발 및
사업화실적</td><td colspan="2">개발과제명 및 내용</td><td>근무처</td><td>개발기간</td><td>사업규모
(소요자금)</td><td>비고
(사업화현황 등)</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2"></td><td></td><td></td><td></td><td></td></tr>
<tr><td>경영철학 및
경영목표</td><td colspan="6">(창업동기, 향후 회사발전계획, 인사/조직관리 및 거래처 선정중시 사항 등)</td></tr>
</table>

부록 5

2. 연구개발 인력 및 시설현황

인력 현황 (경영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동업종)
인력 현황 (기술진)	직위	성명	생년월일	최종학력(전공)	주요경력(동업종)
사업장규모	사무실 소재지			면적	(㎡)
	연구소 소재지			면적	(㎡)
설비현황 (연구장비)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 학교 기자재 활용 시 장비명 뒤에 '(학교 자산)' 추가 기재				
설비현황 (기타장비)	장비명		수량	가격	용도

부록 6

3. 기술개발 사업계획

<table>
<tr><td rowspan="7">기술사업개요</td><td>기술(사업)명</td><td colspan="3">※ 출원(예정)·등록 특허 활용 전 예비 출원</td><td>개발방법</td><td colspan="3">□단독 □공동</td></tr>
<tr><td>개발(예정)
기간</td><td></td><td>개발비용</td><td>천원</td><td>제품화
여부</td><td colspan="3">□여 □부</td></tr>
<tr><td>권리구분</td><td colspan="3">□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
□프로그램저작권 □기타( )</td><td rowspan="2">사업화
단계</td><td colspan="3" rowspan="2">□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단계
□양산(시장판매·사업화포함)준비단계
□제품화(상품화·제작포함)완료단계
□시제품(연구·개발·기획)단계</td></tr>
<tr><td>등록(출원)번호</td><td colspan="3"></td></tr>
<tr><td>권리자</td><td>성명</td><td></td><td>주민(법인)
등록번호</td><td></td><td>관계</td><td></td></tr>
<tr><td>발명자</td><td>성명</td><td></td><td>주민(법인)
등록번호</td><td></td><td>관계</td><td></td></tr>
<tr><td>주요
기술내용</td><td colspan="7">(제품의 특성 및 핵심기술, 기술개발내용 및 과정 등)</td></tr>
<tr><td>기술(품질) 및
기술경쟁력</td><td colspan="7">(국내 경쟁사 제품 및 국외 경쟁사 제품과의 품질, 기술, 가격 비교 등)</td></tr>
<tr><td>생산추진계획</td><td colspan="7">(개발완료 및 제품화시기, 설비도입, 양산착수, 판매 등의 계획)</td></tr>
<tr><td>기대효과</td><td colspan="7">(매출증대, 고용창출, 경영개선 효과 등)</td></tr>
<tr><td>투자유치
계획</td><td colspan="7"></td></tr>
</table>

부록 7

4. 시장 현황

<table>
<tr><td rowspan="11">시장현황 및
특성
(단위: 백만원)</td><td colspan="5">- 시장규모</td></tr>
<tr><td>구 분</td><td>직전년도</td><td>당해년도</td><td>차기년도</td><td>차차기년도</td></tr>
<tr><td>세계시장</td><td></td><td></td><td></td><td></td></tr>
<tr><td>국내시장</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 작성근거(반드시 기재)</td></tr>
<tr><td>구 분</td><td colspan="2">국 내</td><td colspan="2">국 외</td></tr>
<tr><td>시장상태(독점/경쟁)</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안전성(유/무, 고/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지속성(유/무, 고/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성장성(유/무, 고/저)</td><td colspan="2"></td><td colspan="2"></td></tr>
<tr><td rowspan="4">주요 수요처
(년)</td><td colspan="2">수요처명</td><td colspan="2">수요처의 총수요규모</td><td>당사 수주(납품)
예상 규모</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colspan="2"></td><td colspan="2"></td><td></td></tr>
<tr><td rowspan="2">경쟁업체 현황</td><td>국내시장</td><td colspan="4">(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td></tr>
<tr><td>국외시장</td><td colspan="4">(업체명, 기술개발계획, 양산/증산계획 등)</td></tr>
<tr><td>판매전략</td><td colspan="5">(경쟁제품과의 비교 등을 통한 신청기술(제품)의 판매전략 위주로 기술)</td></tr>
</table>

	제품명	직전년도	당해년도	차기년도	차차기년도
판매계획 (단위: 백만원)					

부록 8

5. 향후 추진계획(상세기술 요망)

향후 추진일정 계획	
인력수급 계획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	※ 창업기업의 참여 인력 간 지분구조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설비투자계획	(추가 설비명, 구입처, 규격, 금액 등을 명시)
학교기여계획	

부록 9

[별표 1] 확약서(제4조 관련): 규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확약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이 확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및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1. 본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20__. __. __. 자로 [창업예정회사명]에 관한 창업 승인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창업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시행세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매도통지의무,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의 내용,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 시 본인의 처분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6조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시행세칙 제8조에 따라 창업기업의 이사회 안건을 수증자에 서면으로 사전 통지할 것을 확약합니다.

5. 본인은 본인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6. 위 사항 이외에도 본인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__. __. __.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부)

(인)

부록 9

[별표 2] 확약서(제4조 관련): 규정 제2조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확약서

본인은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이하 “귀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약합니다.

이 확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이 확약서에서 특별히 정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대학교 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및 「창업교원의 주식출연 및 매각 등에 관한 시행세칙」(이하 “시행세칙”)에서 정의된 내용과 같은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합니다.

1. 본인은 규정 제9조에 따라 20__. __. __. 자로 [창업예정회사명]에 관한 창업 승인을 신청함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규정 제1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창업기업의 자본금 1억원을 한도로 창업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주식을 귀 법인 또는 귀 법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출연할 것을 확약합니다.

3. 본인은 본인이 보유하는 창업기업의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시행세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본인의 매도통지의무,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의 내용, 동반매도권자의 동반매도권 행사 시 본인의 처분의무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시행세칙 제6조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4. 본인은 본인이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본인에 대한 창업지원이 중단되거나 창업승인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합니다.

5. 위 사항 이외에도 본인은 규정 및 시행세칙의 전반적인 내용을 인지하고 있으며, 규정 및 시행세칙에 따른 본인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또한, 규정 및 시행세칙이 개정되는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에 따른 의무사항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20__. __. __.

서울대학교 대학 학과(부)

(인)

서 울 대 학 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서울대학교 교원 창업 가이드북

2026년 개정판

교원 창업 승인 문의 창업지원단 창업기획지원팀 02-880-2226
홈페이지 https://startup.snu.ac.kr
이메일 startupsnu@snu.ac.kr